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4568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김용휘, 신정혜, 이시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정미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5. 선고 2019가단58996 판결

주 문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79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정지선에서 4.6m 지난 지점에 위치해 있다가 출발한 점,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방향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의 주행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차로는 사거리 교차로가 아닌 오거리 교차로인데, 원고 차량은 진행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가시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볼 수 없고 가시 지점 이후에는 급제동을 하더라도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교통당국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을 허용토록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주의’라는 표지판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에 대해 ‘직진금지’라는 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된 점,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정지선에서 4.6m 지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정차 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 쪽으로 진입한 곳이 아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오거리 교차로가 구조상 사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교통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이상 우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현,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